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유리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유리 글로벌거래소 증권투자신탁1호[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 글로벌거래소 증권투자신탁1호[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일괄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유리 글로벌거래소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유리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 2009년 8월 03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09년 8월 20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10조좌까지 모집
[모집(매출) 총액 :]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 각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목차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2. 모집예정기간
3. 모집예정금액
4. 펀드존속기간
5. 분류
6. 집합투자업자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6. 투자운용인력
7. 투자실적 추이(세전기준)

III. 매입 · 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환매, 전환 절차

IV. 요약 재무정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해외주식 등 외화자산에 투자하므로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따라 일부 기재항목은 기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기재가 생략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대신 기재될 수 있으니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명칭	유리 글로벌거래소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펀드코드 : 66231)			
(종류)클래스	A	C	C1	I
한국금융투자협회펀드코드	66229	66230	70448	66388

2. 모집예정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 주1)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 주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합니다.

4. 펀드존속기간 :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용어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 보다 긴 임의의 기간을 투자기간으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 등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분류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유리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부국증권빌딩 9층(150-995) 02)2168-7900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주식 및 외국주식	6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법 제9조제13항의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및 지분증권을 기초로 하여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 단,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제외한다. -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1호의 성질을 구비한 것. 단,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 등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한다
(2)	채권 및 외국채권	4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 -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이나 증서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으로서 위의 성질을 구비한 것. 단, 위에 적용되는 신용평가등급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사채권의 경우 2이상(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3)	어음 및 외국어음	4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만기가 1년 이내이고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것 및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위의 성질을 구비한 것
(4)	자산유동화 증권 및 외국자산 유동화증권	4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 외국정부 또는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위의 성질을 구비한 것

(5)	금리스왑 거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6)	집합투자증권	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외국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으로서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을 포함합니다.) -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자산총액의 100분의 95 이상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운용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을 외국에 소재하는 자로서 그 국가로부터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허가를 받거나 그 국가에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한 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운용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자산총액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7)	증권 대여	수익증권 등을 제외한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수익증권 등을 제외한 증권총액의 50% 이하	
(8)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총액의 50% 이하	
(9)	증권 차입	수익증권 등을 제외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10)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해외장내상품을 포함한다) 및 장외파생상품(해외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장외파생상품은 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통화 또는 통화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11)	고유재산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3항제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2)	단기대출	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13)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가 1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14)	외화표시자산	(12) 및 (13)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p>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5)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p>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p> <p>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p> <p>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p> <p>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p> <p>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 등으로 (1)~(5)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 주식시장에 상장된 증권, 선물, 상품 등 각종 거래소와 거래소 유관기관이 발행한 외국주식 등에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 투자신탁으로서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장기적인 자본이득 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 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투자 전략]

가) 포트폴리오 구성전략

-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전세계 주요국가의 증권(Stocks), 선물(Futures), 상품(Commodities) 및 기타 거래대상객체(예: 기후, Co2, 예술품 등) 등이 거래되는 각종 거래소(Exchange)와 거래소 유관기관(독립된 청산소, 대체결제소, 그리고 각종 대안거래소에 출자한 기관(IB, 은행 및 기타 회사 등))에서 발행한 상장주식에 투자합니다.
- 당사의 자체기준(정성적 평가 (80%) 및 정량적 평가(20%))에 의해 종목별 등급을 (A, B, C, D 등)부여하고 등급상황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합니다 . 등급의 부여는 계량적 요소 외에 비계량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운용자의 주관 및 재량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 투자신탁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의 요건, 종목간 비중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 특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산배분 전략

- 이 펀드는 운용자의 재량에 의해 주식투자비중 조절 등을 통한 자산배분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자산배분전략의 의도와 달리 주가수준 등이 변화할 경우 투자신탁의 성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 기타

- 시장상황에 따라 신탁재산의 일부를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회사채 등에 투자하여 환매대금의 예비적 확보 및 이자소득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 상기에 제시된 운용 목표 및 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략이 반드시 유효하게 투자목적 실현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위험관리전략]

가) 위험 관리 체계

- 운용역 개인의 독단의 의한 의사결정을 지양하기 위하여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은 자산운용전략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에서 결정하며, 일상적인 업무처리는 운용업 실무에 정해진 표준업무처리절차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리스크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 리스크관리본부에서 각종 법령 및 규정, 지침, 내규가 지켜지는 지를 모니터링하고 독립적으로 펀드의 실적평가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합니다.

나) 환위험 관리 전략

-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자산에의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의 관리를 위해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억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환헤지를

실행할 경우 외국통화의 가치가 원화에 대비하여 하락하는 때에는 환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신탁의 성과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외국통화의 가치가 원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때에는 환이익 획득 기회를 상실하여 투자신탁의 성과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환헤지에는 일정한 비용이 수반되며 이러한 비용은 투자신탁의 성과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환헤지 비용은 통화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략 연간 기준으로 1%-2%사이인 것으로 분석 됩니다

- 현실적으로 완전한 환헤지는 불가능하므로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자산의 순자산총액의 60±10% 범위에서 환헤지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투자신탁의 설정/헤지, 환율전망, 외환시장 상황, 비용부담, 운용자의 판단 등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예정 헤지비율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고 실제 헤지비율이 예정 헤지비율에 비해 불리한 사후적 성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접근 가능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과도한 비용을 수반하는 등의 사유로 환헤지가 용이하지 않은 통화로 표시되는 외화자산에 대해서는 헤지 거래를 실행하지 않거나 당해 통화와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은 통화로 대신하여 헤지 거래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환헤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당한 수준의 의도되지 않은 외환관련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수익구조

- 신탁재산을 주로 해외 주식 등 외화표시자산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특성과 환헤지 전략의 한계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주식시세의 등락 및 배당과 환율변동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 밖에 주식에 투자하고 남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평가손익 등이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주식의 시세는 해당 주식 발행 기업 경영성과 및 주식에 대한 시장의 수급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요인은 경제·정치·자연·사회·문화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투자대상 주식 발행기업의 경영성과가 우수할수록, 투자대상 주식에 대한 공급이 수요보다 클수록 주식의 시세는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투자신탁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반대의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 이 투자신탁 고유의 운용전략이 유효하게 목표를 달성하여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 투자신탁의 주식투자 성과는 투자대상국의 평균적인 주가상승률을 상회하게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대상국의 평균적인 주가상승률에 미달하게 됩니다. 운용자의 재량에 따라 적극적인 초과수익전략을 구사하는 특성 상 이 투자신탁의 주식투자 성과가 투자대상국의 평균적인 주가변동률에 일정한 제한 없이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자본이득, 배당수입, 이자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본이득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운용사나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을 은행 등에서 가입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만을 기재한 것인 바, 위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해외 주식에 투자하므로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경제·사회·자연현상 등의 영향을 받아 가격이 항상 급격히 변화하여 높은 위험을 지니는 투자대상인 주식의 시세 변화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주식관련파생상품, 주식관련채권(전환사채 등) 등과 같이 그 가격이 주가에 연동되어 결정되는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는 바, 이러
-----------	---

	한 자산에 투자할 경우에도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주식의 시세 변화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체계적 위험	이 투자신탁의 고유한 운용전략 및 목표의 특성과 운용자의 재량에 의해 이 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는 시장 포트폴리오(비교지수의 포트폴리오)와 상이하게 구성됩니다.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은 시장의 평균적인 위험 외에 포트폴리오의 특성으로 인한 위험, 즉 비체계적인 위험을 추가로 수반하며 이는 시장평균(비교지수) 성과에 미달하는 성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특정 업종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므로 일반적인 주식투자가 수반하는 위험 외에 특정 업종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을 추가로 수반합니다.
해외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주식 외의 해외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으므로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에 노출됩니다. 해외투자는 일반적으로 언어 및 제도의 차이, 지리적 원격성 등으로 인해 국내투자에 비해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위험을 수반합니다.
환율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주식 외의 해외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으므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자산에의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의 관리를 위해 환헤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억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환헤지를 실행할 경우 외국통화의 가치가 원화에 대비하여 하락하는 때에는 환헤지포지션에서 이익이 발생하여 외화자산의 환손실을 상쇄함으로써 투자신탁의 성과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지만, 외국통화의 가치가 원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때에는 환헤지포지션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외화자산에서 발생하는 환이익을 상쇄함으로써 투자신탁의 성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환헤지에는 일정한 비용이 수반되며 이러한 비용은 투자신탁의 성과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접근 가능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과도한 비용을 수반하는 등의 사유로 환헤지가 용이하지 않은 통화로 표시되는 외화자산에 대해서는 헤지 거래를 실행하지 않거나 당해 통화와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은 통화로 대신하여 헤지 거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헤지가 적절히 이루어 지지 않거나 상당한 수준의 의도되지 않은 외환관련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산배분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편입비중 조절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편입비중 조절전략의 의도와 다르게 주식가격이 변화할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채무증권과 같은 주식 외의 자산에 대해서 금리민감도를 조절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바, 의도와 다르게 금리가 변화할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서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 위험	이 투자신탁은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표준화된 장내시장거래와 달리 거래의 이행을 보증하는 장치가 없고, 규제와 감독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적절한 시세가 형성되는 않는 등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 예금, 단기대출 등의 자산을 발행하거나 그와 관련한 채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러한 자산의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전액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동성위험	이 투자신탁이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거래가 시장에서 충분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하여 손실을 유발합니다.
금리변동위험	금리는 경제·사회·자연현상 등의 영향을 받아 시세가 항상 변화하는 경제지표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일정 부분을 금리의 영향을 받는 채무증권 등 이자수입을 추구하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리의 상승 시 이러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금리의 하락 시에는 이러한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상환금 등의 채투자 수익이 하락하여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1)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유리자산운용(주)은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5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 “유리자산운용(주)의 위험등급 분류기준”과 같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그 시세가 항시 변동하여 높은 위험을 지니는 투자대상인 주식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급격한 시세변동에 노출되고 큰 규모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지니므로 유리자산운용(주)은 이 투자신탁을 5등급 중 가장 위험이 **높은 수준인 1등급 (매우 높은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주식 등 위험자산에의 투자가 수반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위험이 유발하는 손실을 감내할 충분한 의사와 능력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전체 보유자산 대비 합리적 비중을 초과하여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거나 특정 기간 내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 자금을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행위를 절대 금할 것을 권고합니다.

[유리자산운용(주)의 위험등급 분류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설명
1등급	매우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위험회피 외 목적)에 집합투자기구재산의 6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위험회피 외 목적)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집합투자기구재산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구조화된 성과를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수익구조상의 원금보존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 외화자산 및 관련파생상품, 원자재 및 관련파생상품에 집합투자기구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이상에 준하거나 이상을 초과하는 위험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집합투자기구 (예 :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위험회피 외 목적)에 투자 가능한 최대비율이 집합투자기구재산의 30% 초과~60% 미만인 집합투자기구 · 시장 대표성을 지니거나 광범위한 분산투자를 추구하는 국내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것으로서 인덱스형 및 인헨스트 인덱스형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 이상에 준하는 위험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위험회피 외 목적)에 투자가능 한 최대비율이

		집합투자기구조산의 30% 이하인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집합투자기구조산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구조화된 성과를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수익구조상의 원금보존추구가 이루어지는 것 · 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나 시장중립적 성과를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위험회피 외 목적) 투자로 인한 위험평가액의 한도가 집합투자기구조산의 20% 이내인 것 · 이상에 준하는 위험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위험	· 투자등급(BBB-) 이상의 신용등급을 부여 받은 은행채 및 회사채 또는 이에 준하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 · 이상에 준하는 위험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낮은 위험	· MMF · 국공채에만 투자할 수 있 채권형 집합투자기구 · 이상에 준하는 위험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집합투자기구

- 1) 상기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유리자산운용의 내부기준으로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 각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은 해당 상품 유형의 기본적 속성을 단순화하여 기술한 것입니다. 실제 위험등급의 분류는 상품의 세부적 속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일부 상품의 경우 부여된 위험등급이 해당 위험등급에 대한 상기 설명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리자산운용의 내부절차에 의한 판단에 따라 별도로 분류합니다.

6. 투자운용인력

(09년3월4일 기준)

성명	생년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현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 기구의 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수탁고)	
최병로	1964 (46세)	대안 투자 본부장	26개	1,801억	KAIST금융공학 석사 서울대 경영학 학사 한국투신(1990 - 2002) 플러스자산(2003 - 2005) 당사(2005.5 - 현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대안투자본부가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 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1) 연평균 수익률

기간	최근 1년 (‘08.03.07~ ‘09.03.06)	최근 2년 (‘07.03.07~ ‘09.03.06)	최근 3년 (‘06.03.07~ ‘09.03.06)	최근 5년 (‘04.02.02~ ‘09.03.06)	설정일 이후 (‘07.03.12~ ‘09.03.06)
투자신탁(전체)	-49.76	-	-	-	-23.22
비교지수	-48.69	-	-	-	-30.73
Class A	-50.70	-	-	-	-24.59
비교지수	-48.69	-	-	-	-30.73

Class C	-51.24	-	-	-	-25.37
비교지수	-48.69	-	-	-	-30.73
Class I	-50.33	-	-	-	-23.97
비교지수	-48.69	-	-	-	-30.10

(주1) 비교지수: DJ Exchange Index 90% + CD91 1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연도별 수익률 추이

(09.03.06기준, 억원)

기 간	최근 1년차 (‘08.03.07~ ‘09.03.06)	최근 2년차 (‘07.03.07~ ‘08.03.06)	최근 3년차 (‘06.03.07~ ‘07.03.06)	최근 4년차 (‘05.03.07~ ‘06.03.06)	최근 5년차 (‘04.03.07~ ‘05.03.06)
투자신탁 (전체)	-49.76	17.69	-	-	-
비교지수	-48.69	-6.10	-	-	-
Class A	-50.70	15.72	-	-	-
비교지수	-48.69	-6.10	-	-	-
Class C	-51.24	14.59	-	-	-
비교지수	-48.69	-6.10	-	-	-
Class I	-50.33	16.99	-	-	-
비교지수	-48.69	-4.13	-	-	-

(주1) 비교지수: DJ Exchange Index 90% + CD91 1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최근2년차 수익률(투자신탁전체, Class A, Class C)은 2007년3월12일(설정일)~2008년3월6일의 기간수익률을 기재하였습니다.

(주4) 최근2년차 수익률(Class I)은 2007년3월15일(설정일)~2008년3월6일의 기간수익률을 기재하였습니다.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연간)				비고 (지급시기)
	Class A	Class C	Class C1	Class I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없음			납입시
후취판매수수료	없음	없음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 금 기준 징수)	9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환매시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	------	------

	Class A	Class C	Class C1	Class I	
집합투자업자 보수	연 0.700%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연 0.900%	연 1.900%	연 0.030%	연 0.250%	
신탁업자 보수	연 0.07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연 0.015%				
기타비용	연 0.239%	연 0.226%	연 0.222%	연 0.200	사유발생시
총보수·비용	연 1.924%	연 2.911%	연 1.037%	연 1.235%	-
증권 거래비용	연 0.540%	연 0.551%	연 0.536%	0.542%	사유발생시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정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3) 증권 거래비용은 총보수·비용비율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5)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6) 이 투자신탁은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또는 주권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바, 상기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이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하여 계산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를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단,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발생하는 기타 비용은 비용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을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천원]

구분	1년	3년	5년	10년
Class A	296천원	704천원	1,137천원	2,339천원
Class C	295천원	900천원	1,530천원	3,218천원
Class C1	106천원	330천원	572천원	1,265천원
Class I	126천원	392천원	678천원	1,490천원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 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를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증권매매수수료 등의 거래비용은 비용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2)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발생하는 기타 비용은 비용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 원천징수세액은 세법 등에서 정한 일정한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 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3) 해외 상장주식 투자에 따른 비과세 안내

2007년 6월 1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을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행 및 유통되는 뮤추얼펀드, 리츠, ETF의 지분증권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특수목적회사(paper company ; 해당 국가 법인세 부담이 없는 회사)의 주식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과세관련 유의사항 안내

- 국내 상장주식[외국 상장주식 포함(2009년12월31일까지)] 또는 동 주식관련 선물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과는 달리 외국간접투자기구 또는 외국 주식관련 선물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 등(2007년6월5일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경우보다 과세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내외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 전 기준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자 입장에서의 투자손익은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되지만 과세대상 이익 계산의 실무적 편의를 위해 과표기준가격을 별도로 산출하여 과세대상 이익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기준가격의 하락에 불구하고 과표기준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수익자는 투자손실의 발생에 불구하고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홈페이지 및 영업소 등을 통해 기준가격과 함께 공시됩니다.

-수익자 입장에서는 세전기준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로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과세대상 이익보다 큰 경우

(나)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이익보다 2007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손실이 더 큰 경우 (∵ 2007년 6월 1일 이전 가입한 수익자에 한하여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 평가 이익부분은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

※ 상기 세율 등 과세관련 사항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3. 기준가격의 산정 및 매입, 환매절차

(1) 기준가격의 산정

구 분	내 용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 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등에 공고 또는 게시 및 단말기로 조회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장소	판매사 영업점포,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매입, 환매절차

가. 매입

1) 매입방법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중 영업점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에서 인터넷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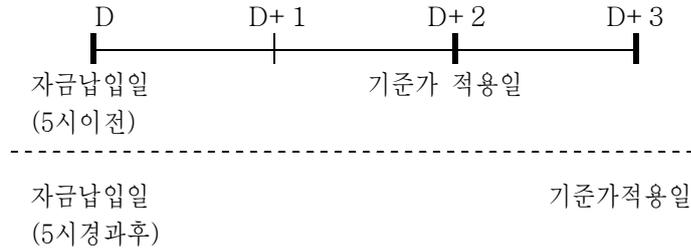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Class A :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Class C :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Class C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제17조의2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또는 100억 이상 매입한 개인 및 500억 이상 매입한 법인투자자
- Class I : 납입금액 100억원 이상인 투자자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주1) 수익증권의 매입 이후에는 일체의 투자성과가 투자자에 귀속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에 유의하시어 수익증권의 매입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등

- 이 투자신탁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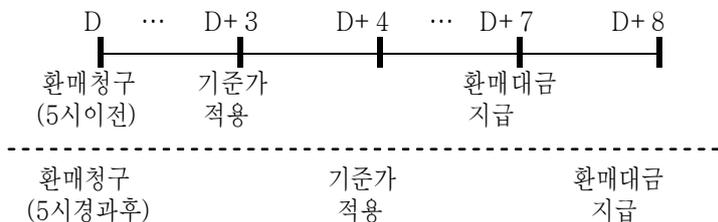
1) 수익증권의 환매

투자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산·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 발생시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3) 환매수수료

빈번한 환매는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수수료 증가 및 운용에 대한 교란 등을 야기하여 투자성과를 저하시키는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이러한 문제발생 소지 및 투기적인 단기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수익증권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 재산으로 편입 됩니다.

구 분		지급비율(연간,%)	비고 (지급시기)
종 류		종류A, C, C1, I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주1) 단 채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 이 투자신탁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7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사유등으로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이상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며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으며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지합니다.

7)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持分)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을 일부 환매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 총회에서 일부 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일부 환매를 결정한 날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가격을 계산하여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법 제237조제6항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발행·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 환매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계약 또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IV 요약 재무정보

가. 요약대차대조표

(단위 : 원)

항목	제 2 기 2009.03.11	제 1 기 2008.03.11
운용자산	66,481,294,052	149,798,850,146
현금및예치금	16,897,492,872	17,690,509,772
현금및현금성자산	7,441,496,615	1,372,342
증거금	2,527,605,470	3,956,290,633
기타예금	6,928,390,787	13,732,846,797
대출채권	0	39,600,000,980
콜론	0	39,600,000,980
유가증권	49,583,801,180	92,508,339,394
지분증권	49,583,801,180	92,508,339,394
파생상품	847,296,000	0
기타자산	1,610,065,015	1,324,292,23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0	1,229,613,351
정산미수금	1,141,680,000	6,750,000
미수이자	3,168,505	6,830,306
미수배당금	233,921,110	170,782,669
선납세	231,295,400	175,445,329
외화환산손익조정	0	-265,129,424
자 산 총 계	68,091,359,067	151,123,142,377
기타부채	407,601,552	16,845,048,760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0	1,290,062,999
정산미지급금	0	385,480,000
해지미지급금	96,104,018	887,944,539
미지급운용수수료	125,534,554	290,463,214
미지급판매수수료	166,208,681	399,523,909
미지급수탁수수료	15,243,825	35,271,062
수수료미지급금	4,510,474	6,033,869
미지급이익분배금	0	13,550,269,168
부 채 총 계	407,601,552	16,845,048,760
원 본	129,160,825,466	134,609,003,315
이익잉여금	-60,629,771,951	-265,129,424
자 본 총 계	68,531,053,515	134,343,873,891
부채 및 자본 총계	68,938,655,067	151,188,922,651
총과수	129,160,825,466	134,609,003,315
기준가격	530.59	999.51

나.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 원)

항목	제 2 기 2008.03.12 ~ 2009.03.11	제 1 기 2007.03.13 ~ 2008.03.11
운 용 수 익(또는 운 용 손 실)	-62,910,368,789	-945,501,619
투자수익	3,654,824,276	3,314,811,404
이자수익	841,735,840	1,196,939,389
배당금수익	2,810,908,287	2,036,839,396
수수료수익	2,180,149	81,032,619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99,817,627,218	45,059,509,599

지분증권매매차익	926,521,012	13,253,656,562
파생상품매매차익	65,707,519,200	19,501,751,982
외환거래매매차익	19,724,783,962	3,138,336,125
외환거래평가차익	13,458,803,044	9,165,764,930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66,821,922,232	49,495,555,641
지분증권매매차손	37,023,172,903	3,328,010,666
채무증권매매차손	0	980
파생상품매매차손	93,356,284,856	26,233,927,173
외환거래매매차손	5,354,751,269	1,545,994,338
지분증권평가차손	31,052,409,204	18,387,622,484
파생상품평가차손	35,304,000	0
기타운용수익	439,101,949	175,733,019
운 용 비 용	2,103,775,603	2,266,399,643
운용수수료	747,498,397	853,146,870
판매수수료	1,019,724,326	1,193,823,848
수탁수수료	90,767,646	104,094,920
매매수수료	3,309,735	5,237,995
기타운용비용	242,475,499	110,096,01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65,014,144,392	-3,211,901,262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470.26	-35.77